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



발간 목적

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가명처리,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,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·유형·목적별 세부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여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,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 및 거버넌스, 안전조치, 윤리적 사항 등을 정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제·개정 이력

개인정보보호 관련 법·제도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.

일자	주요 내용
'20. 9. 발간	보건의료데이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명처리 관련사항 안내
'21. 1. 개정	데이터심의위원회(DRB) 위탁 및 간소화 사항 안내, 관련 계약서 양식 추가 등
'22. 12. 개정	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공통기준 제시, 데이터심의위원회(DRB) 운영기준 개선
'24. 1. 개정	비정형데이터 및 유전체 정보 가명처리 허용, 가명정보 제공 시 법적책임 명확화
'24. 12. 개정	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및 절차 구체화, 가명처리 시나리오 추가 등

재검토 기한

안내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일(2024년 12월)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.31.까지를 말함)마다 보완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
저작권 표시

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, 가공·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* 출처: 보건복지부·개인정보보호위원회, 「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」 2024.12.

문의처

안내서 내용 관련 문의는 소관 법령별로 다음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.

-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(☎044-202-2941, 2947)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(☎02-2100-3088, 3079, 3049)

관계법령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8조의2(가명정보의 처리 등)

- ※ 법령 최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,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*, 개인정보 포털**을 참고
 - *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(www.pipc.go.kr) : 법령 〉 법령정보 〉 안내서
 - ** 개인정보 포털(www.privacy.go.kr) : 자료 〉 자료보기 〉 안내서